



## (재)전북지역산업진흥원

수 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공고 홍보 협조요청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문을 송부드리오니, 지역 내 중소기업이 본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 가. 목 적 :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나. 사업내용 : 지역 (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지원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
- 다.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라. 접 수 처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smtech.go.kr>)
- 마. 접수기간 : '26년 2월 11일(수)부터 3월 3일(화) 18시까지
- 바. 협조사항 :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공고 홍보

붙임.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1부. 끝.

## 전북지역산업진흥원장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재)자동차융합기술원장, 한국건설기계연구원장, 한국탄소산업진흥원장, ECO융합성유연연구원장,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장, (사)캠틱종합기술원장,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장, (재)진안홍삼연구소장,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장, (재)고창식품산업연구원장,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장,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장

수신자

수석연구원 김장호 실장 홍호 원장 02/02  
한준호

협조자

시행 산업육성실-79 ( 2026. 2. 2. ) 접수 ( )

우 5489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 <https://jb.riia.or.kr>

전화 063-278-9739 /전송 063-278-9743 / [jhk5096@riia.or.kr](mailto:jhk5096@riia.or.kr) / 공개

##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주의 사항 -

1.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상세 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 신청 전 공고문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예비)선도기업 중심의 공급망 협력 R&D 및 잠재기업 혁신역량 강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 주요 변경사항

구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사항	
	'25년도	'26년도
지원규모 확대	•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37개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74개	• 신규 지원 목표과제수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157개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149개
지원품목 확대	• 전략품목 143개, 세부품목 199개	• 전략품목 159개, 세부품목 525개
지원 기준 완화	• 매출액(매출증가율) 기준	• 매출액(매출증가율) 기준 또는 R&D집약도
사업화 연계 확대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지원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50*』 연계지원 • (내역2) 지역특화산업육성(성장사다리) 연계지원

### 3.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혁신선도기업 및 주력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 중소기업, 대학(필수) 및 대·중견 기업, 글로벌 기업, 혁신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선택)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통한 산·학·연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7억/년)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 지역 주력산업 내 잠재기업을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지원(최대 24개월, 최대 2억/년)

- (지원유형) 품목지정형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1] 품목 개요서' 참조

- (지원규모) 총 734.3억원(국비) 내외

\* 국비 예산에 따라 지방비 매칭(국비:지방비=7:3)

구분	내역사업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지원유형	품목지정	
지원목표	157개 과제 내외	149개 과제 내외
지원규모 (국비기준)	577.4억원	156.9억원
지원기간	최대 24개월	
	- (1차년도) 2026.04.01. ~ 2026.12.31.	
	- (2차년도) 2027.01.01. ~ 2027.12.31.	
지원한도	최대 24개월	
	- (3차년도) 2028.01.01. ~ 2028.03.31.	
지원한도	최대 7억원/연	최대 2억원/연
지원체계	중소기업(주관) + 중소기업(공동) + 대학(공동 또는 위탁) + (선택)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공동 또는 위탁)

\* (내역1) 최소 중소기업(주관) + 중소기업(공동) + 대학(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구성 필수  
(내역2) 중소기업(주관) 단독 또는 중소기업(주관) + (선택)대학 대·중견·중소기업 연구기관 등(공동 또는 위탁) 컨소시엄

※ 지원규모 및 지원목표는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4. 신청자격

□ (내역사업별 요건) 지역별 지정된 품목 및 개요서 확인

\* 자격요건의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KSIC)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지원유형	자격요건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p>&lt;주관연구개발기관&gt;</p> <p>▶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p> <p>*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p> <p>▶ (필수)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p> <p>①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A) 이상인 기업인면서, R&amp;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p> <p>②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인 기업인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amp;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p> <p>③ R&amp;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p> <p>* ①, ②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p> <p>** 매출액과 R&amp;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p>
	<p>&lt;공동연구개발기관&gt;</p> <p>▶ (필수)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 + 대학*</p> <p>▶ (선택)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p> <p>&lt;위탁연구개발기관&gt;</p> <p>▶ (필수) 대학*</p> <p>▶ (선택)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산학연 협력과제 우대)</p> <p>* 대학은 공동 또는 위탁 유형 중 택1 하여 컨소시엄 참여 필수</p>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	<p>&lt;주관연구개발기관&gt;</p> <p>▶ (필수) 14개 시도 소재(수도권 제외) 산업분야별 KSIC Code 보유 중소기업</p> <p>*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기준 해당 지역에 소재해야 함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 공고문 접수 마감일 기준)</p> <p>▶ (필수) ①, ②, ③ 요건 중 최소 1개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p> <p>①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B) 이상 세부분야별 기준액(A) 미만인 기업인면서, R&amp;D 집약도((연구개발비/매출액)×100)가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p>

지원유형	자격요건
	<p>② 매출액이 세부분야별 기준액(C)이상인면서, 매출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중, R&amp;D 집약도 1% 이상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p> <p>③ R&amp;D 집약도가 5% 이상인 기업</p> <p>* ①, ②의 분야별 매출액 기준은 [붙임2] 분야별 매출액 기준 참고</p> <p>** 매출액과 R&amp;D집약도 '24년 또는 최근 3년('22~'24) 산술평균 기준을 적용하고, 매출증가율은 최근 3년('22~'24) 연평균 성장률(CAGR)을 적용</p> <p>&lt;공동연구개발기관&gt;</p> <p>▶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p> <p>&lt;위탁연구개발기관&gt;</p> <p>▶ (선택) 대학, 중소기업, 대·중견, 연구기관, 비영리기관 등 (산학연 협력과제 우대)</p>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 중견·대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내역1은 필수)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성과공유 이행계획서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필수(협약 전 별도 안내)

\*\*\* '25년 결산 확정 전 "잠정 재무정보"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가능 시 최근 3년('23~'25) 적용 가능

#### 5. 지원유형별 평가기준

□ 공통지표(80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기술성	연구개발 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 내용 및 목표의 품목 부합성</li> <li>기술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li> <li>목표의 체계적 제시 및 정량적인 목표 제시 여부</li> </ul>
	추진전략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진체계 및 역할분담 적합성</li> <li>연차별 연구개발계획 구체성</li> <li>연구개발비 산출 근거 명확성 및 운용계획 적절성</li> </ul>
연구역량	연구인력 구성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인력 확보의 적정성 및 수행역량 보유 여부</li> <li>연구 조직구성의 적정성</li> </ul>
	연구 인프라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 실적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여부</li> <li>인프라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연구개발과의 연관성</li> </ul>
사업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 품목의 사업화 가능성과 시장전망 우수성</li> <li>사업화 추진전략이 구체성 및 타당성</li> <li>고용 및 매출 목표 타당성</li> <li>사업화 실행계획의 구체성</li> </ul>
	기술개발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가적인 가치(extra value) 창출 가능성</li> <li>* 기술이전, 매출·수익 증대, 고용창출 등</li> </ul>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개발 결과(제품, 산출물 등)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li> <li>* 지역 내 직·간접적 고용 증대, 생산성 향상 및 매출 증대 등</li> </ul>
	지역 내 고용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내 인재활용 계획의 적정성</li> <li>* 신규고용 인력 대비 : 80%이상(5) / 50~79%(4) / 25~49%(3) / 10~24%(1) / 9%이하(0)</li> </ul>

□ 내역별 특화지표(20점)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정책목표 부합성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적합성	· 해당 지역의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측면 부합성
	협업·협력 내용의 적절성	· 컨소시엄 구성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핵심 역할 명확성, 구체성 및 협업 추진 가능성
정책목표 부합성 (내역2)	혁신성·성장성	· 연구개발기관의 혁신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가능 여부
	정책목표 부합성	· 해당 지역내 주력(주축)산업과 전략품목의 성장성 및 혁신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 여부

□ 가점(최대 1점)

구분	우대 사항	가점
1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또는 연구책임자 * 최종평가 결과 '우수'판정 통보 시점의 연구책임자	1점
2	○ 지역중소기업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1점
3	○ 내역1, 내역2에서 각각 아래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 (내역1) 최소 컨소시엄(중소기업 2개사+대학) 구성에서 대·중견, 연구소 등을 추가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내역2) 중소기업 단독이 아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1점
4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5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벤처기업	1점
6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 감점

구분	감점 사항	감점
1	○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2	○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R&D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6. 2. 11.(수) ~ 3. 3.(화)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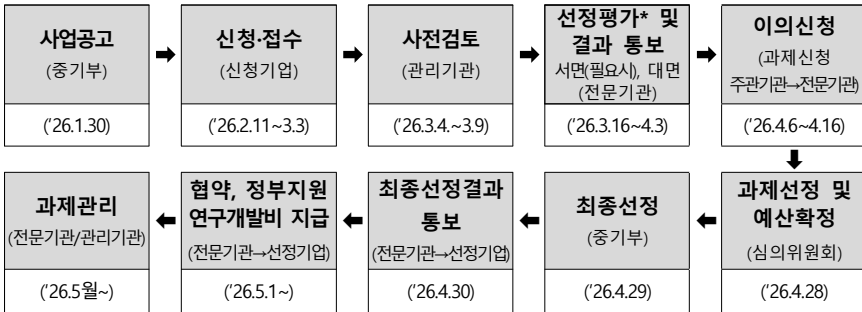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붙임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 ☞ (서식)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구분	(기본) 제출 서류		비고
서식1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1) 연구개발계획서(.hwp) 작성 * [붙임] 1. 지역 내 인재 활용 계획서 2.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4.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공통 필수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자동생성)	
서식2	자격 증빙 및 기업유형 증빙자료		공통 필수
서식3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해당시 필수
서식4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필수
서식5	가.감점 적용 신청서		해당시 필수

## 7. 추진절차 및 일정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 및 일정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평가 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실시

※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및 지역산업진흥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8. 기술료 징수관리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완료 판정 기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등급인 과제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 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내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 관련 공지사항 > "기술료"검색 > "경상기술료 매뉴얼" 참고

\* 법령확인 : [www.smtech.go.kr](http://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자료마당 > 규정 및 서식 >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9.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 지원근거

법령	관련 조항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14조(지역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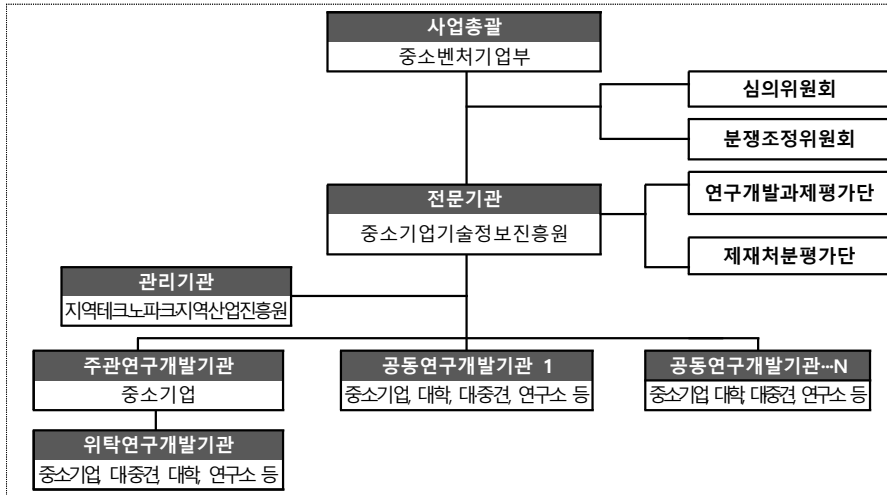
### □ 관련규정

구분	관련 규정
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시행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구분	관련 규정
고시	▶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추진체계



10. 유의·안내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참여유형(공동·위탁) 및 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

□ 「지역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중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기관	참여연구자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정부 지원연구개발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연구개발과제는 3책5공 적용제외\*

\* 3책5공을 적용제외를 받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호 나목부터 바목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만 해당

□ (동시수행 과제수)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수행 중 과제수	신규신청 가능 여부	신규수행 가능 과제수
3개	불가	불가
2개	가능	1개
1개	가능	2개
0개	가능	3개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기업부 소관 R&D 사업을 기준으로 함

□ **(보안등급 분류)**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붙임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고

□ **(고용 의무조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자세한 사항은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조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고용 의무 조건 미충족 시 신규고용 계상 인건비는 전액 환수

□ **(사업비·기간 조정)** 평가결과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연구개발 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연도별 진도보고서 제출('26.12월) 및 진도점검('27.1월) 실시

□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정부·지자체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중소기업 (주관 또는 공동)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대학, 비영리기관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필요 시 부담	
대·중견기업	-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필수이며, 매칭 비율은 성과 공유 지분,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매칭	

\* 대·중견기업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연구개발비 지원 불가(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면제)

\*\* 대·중견기업은 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전부를 현물만 부담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 [참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연구시설·장비비, ③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 현물이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것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8조, 제47조, 제56조, 제64조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함

\*\*\*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는 [붙임3]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참고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의 경우 과제 선정 후 주관기업과 참여기업 간의 사업 착수일(협약 체결일) 전까지 성과공유 이행 표준 계획서(협약시 별도안내)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 **(내역1)**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50+』의 참여기업으로 자동 선정(지역별 레전드 참여 요건 충족기업에 한함)되어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선정 시 프로젝트 주관기관에 의해 관리됨

□ **(내역2)** 지역기업 역량강화에 선정된 주관연구개발 기관은 지역특화 산업육성사업(지역별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사업화 연계 지원

\* 기술개발 후 사업화 연계지원하는 구조로 R&D 과제를 1년 이상 수행 후 지원('26년 신규 선정기업은 '27년부터 연계 지원)

□ 본 사업은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 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선정한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은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 연구개발기관은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기관의 연구(생산)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단, 해당 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관리기관이 아닌 전문기관의 현장실태조사를 받아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등 판단 기준 시점은 과제접수 마감일(3.3 18:00)을 기준으로 함

## 11.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관리기관	부산지역산업진흥원	<b>&lt;지역별 문의처&gt;</b> 신청·접수, 지역별 품목내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기타 유의사항 등	(051)315-9246, 9265, 9264
	대구테크노파크		(053)757-4182, 4185
	광주지역산업진흥원		(062)604-9124
	대전테크노파크		(042)930-4862, 4864, 4865
	울산지역산업진흥원		(052)248-5763
	강원테크노파크		(033)248-8654, 5623
	충북테크노파크		(043)270-2251, 2253
	충남지역산업진흥원		(041)415-2165, 2169
	전북지역산업진흥원		(063)278-9739, 9733
	전남테크노파크		(061)729-2561, 2563, 2569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56, 3057, 3058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613, 3620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50, 3068, 3049
	세종테크노파크		(044)850-2111, 2112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http://pf.kakao.com/_llfqd)